

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안내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제외) 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관계, 발생일, 변동사유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외거주사실 확인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추가 (해당자)	가점산정 기준표	-	[양식]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사유 및 일자,관계,발생일,변동사유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관계, 발생일,변동사유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관계 표시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 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세대원 전원 성명, 주민번호 전체표시 "상세"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실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직계 존.비속	공고일 및 부양기간 동안의 국외거주사실 확인(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전원의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해외단신부임자는 모집공고 참조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 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위임장	당첨자	[양식]접수장소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에 한함/ 대리발급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소명서류	-	부적격 사유에 따라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7)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함